

붙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 대상 제품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중 다음에 해당 되는 품목

○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중 다음 각 목의 의약외품

다.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는 제외

자.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 약사법 제2호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 다음 각 목의 의약외품

가.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1) 살충제

2) 살서제

나.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